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식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1월 10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14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예비비 사용 명세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안 제2조)

나. 예비비 지출 결과를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예비비 불승인 등에 관한 조치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예산서에 지출 목적을 명시하지 않아 그 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투명한 승인 절차가 요구됨

-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sup>1)</sup>과 「지방재정법」 제43조제5항<sup>2)</sup>에는 예비비 지출 및 사용에 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비비의 편성 목적상 예비비의 지출은 재난, 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방의회는 예비비 지출의 적절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에 관해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의 사후통제를 강화하여 충청북도의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나. 제정 가능성 및 절차적 타당성

- 이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하여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한 경우 분기 단위로 그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sup>3)</sup>에 해당하는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함(2025년 1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 또한, 입법예고(2025. 1. 14. ~ 19. / 제출의견 없음) 및 집행기관과의 협의(예산정책담당관)를 거쳐 발의한 것으로 절차적으로 타당함

---

1) 지방자치법[시행 2024. 5. 17.] 제144조(예비비)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방재정법[시행 2024. 5. 17.] 제43조(예비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방자치법[시행 2024. 5. 17.]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다. 주요 내용 검토

- 이 제정안은 본칙 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조문별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음
-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 조문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 강화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함
- **안 제2조**는 예비비 지출의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예비비 지출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로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가 결산 승인과 별도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은 예·결산에 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적절한 감시와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안 제3조**는 예비비 지출의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한 경우 분기별로 그 내역을 소관 상임 위원회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임
  - 예비비는 도지사의 결정으로 집행한 후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어 예비비 사용 전 의회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왔음
  - 조례 제정을 통해 예비비 사용내역을 사전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의회가 결산 이전에 예비비 지출을 미리 파악하고 인지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적 통제권 강화하고 예비비의 무분별한 집행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함

- 안 제4조는 예비비 불승인 등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도지사가 이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임
  -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단서<sup>4)</sup>와 「지방회계법」 제14조제4항<sup>5)</sup>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불승인에 따른 집행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여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예비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 및 통제 등 기능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라. 종합 검토의견

- (필요성) 이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별도 제출, 예비비 지출의 보고, 예비비 불승인 시 조치에 관해 규정하여 예비비 사용의 점검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함
- (타당성) 또한, 예비비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 강화와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예비비의 투명한 집행과 공정성 제고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함
- (법적합성) 이 제정안은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상위 법령 위배 여부,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4) 지방자치법[시행 2024. 5. 17.] 제150조(결산) ① (전단 생략)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지방회계법[시행 2024. 2. 17.] 제14조(결산의 수행)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